

■ 도로법 시행규칙[별지 제24호서식]

## 도로점용허가 신청서

\*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뒤쪽 참조
신청인 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 203-83-00918	
주소(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(무교동,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)		전자우편	
전화번호 02-772-7193		휴대전화번호	
도로의 종류 대로	노선번호 (노선명) ( )		
①점용의 목적 : 지반조사			
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: 삼성동 111-8 외 11, 점용(굴착)면적 : 54.72m <sup>2</sup> , 공사 중 점용 면적 : 540m <sup>2</sup>			
※ 첨부자료 참조(시행 계획서 참조)	점용기간 2018년 05월 19일 ~ 2023년 12월 31일	굴착기간 2018년 05월 19일 ~ 2018년 06월 19일	
첨부내용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노면굴착시공, 시추시공 공사의 시기 2018년 05월 19일 ~ 2018년 06월 19일 ④도로의 복구방법 : 원인자 복구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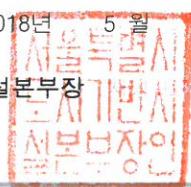
「도로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2018년 5월 일

신청인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

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귀하



첨부서류

- 설계도면(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). 다만,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는 제외합니다.
-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.  
가.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[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는 제외합니다]  
나.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(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 
다.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

⑤수수료

1,000원  
또는 행정청이  
속하는 지방  
자치단체의  
조례로  
정하는 금액

### 유의사항

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(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).

-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, 변상금이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).
-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제1호).
-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).
-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### 작성방법

- ①에는 휴게소, 주유소, 공장, 아파트,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.
-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측척 1,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. 다만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6호 · 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.
-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(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)을 적습니다.
-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(허가자) 복구로 적습니다.
-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,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.

### 처리기간

점용의 구분	특별시			광역시 및 도			국토교통부		
	접수	처리	기간	접수	처리	기간	접수	처리	기간
도로의 일반점용	동	구	5일 (3일)	구 · 읍 · 면	시 · 군	5일 (3일)			7일 (5일)
도로의 일시점용	동	시	2일	구 · 시 · 읍 · 면	구 · 시 · 읍 · 면	2일			7일 (5일)
아치 및 육교 사용	시	시	4일 (3일)	시 · 군	시 · 군	4일 (3일)	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	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	7일 (3일)
공작물의 설치	구	구	10일 (5일)	구 · 시 · 군	시 · 도	8일 (5일)			7일 (5일)
도로의 굴착	구	구	10일 (5일)	구 · 시 · 군	구 · 시 · 군	5일 (3일)			7일 (5일)

비고 1.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,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.

2. ( )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(경찰서)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.

###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

신청하는 곳	1. 고속국도: 한국도로공사지사	담당부서	1. 고속국도: 도로과
	2. 일반국도: 국토관리사무소		2. 일반국도: 보수과
	3. 특별시도 · 광역시도 · 지방도 · 시도 · 군도 및 구도: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및 구(읍 · 면 · 동)		3. 특별시도 · 광역시도 · 지방도 · 시도 · 군도 및 구도: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

